

## 석좌교원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의 교원 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교 석좌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석좌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출연석좌교원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부의 출연금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. (2011.6.8.개정)
- ② 초빙석좌교원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공로가 있는 경우 본교에 초빙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① 석좌교원은 본교의 설립정신 및 본교의 교육목표에 찬동하며,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국내·외 학자나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하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(2011.6.8)

②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(2011.6.8.개정)

**제4조(임용)** ① 석좌교원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없이 석좌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. (2011.6.8.개정)

② 석좌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2011.6.8.개정)

③ 석좌교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(2011.6.8.개정)

1. 추천서(별표 1)
2. 이력서
3. 학력 및 경력증명서
4. 학문적 또는 사회적 업적 등에 관한 개요(별표 2호)
5. 기타 필요한 서류

**제5조(임기)** 석좌교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각 사안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무)** 석좌교원은 임기 중 전임교원의 의무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담당한다. 또한 석.박사과정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으며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수)** ① 석좌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.

② 특정한 연구를 담당하는 석좌교원에게는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직)** 석좌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
2. 본교의 명예와 석좌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**제9조(재원)** ① 출연석좌교원의 필요한 재원은 국내외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

으로 한다. (2011.6.8.개정)

② 초빙석좌교원의 재원은 계약에 따른다.

**제10조(명칭지정)** 석좌교원 기금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출연금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의무)** 석좌교원은 임용 기간 중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전문 개정]

<별표 1>

## 석좌교원추천서

이름	(한글) (영문)	(한문)			
국적		생년월일	년 월 일	성별	
현소속		전화		직위	
현주소				전화	
전공분야		석좌교수 종류	( )출연석좌교수, ( )초빙석좌교수		
출연하는 기관,단체 또는 개인이름 (출연석좌교수에 한함)					
출연금액		원	출연일자	년 월 일	
희망 계약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 ( 년)		
희망 강의 교과목명					

위와 같이 석좌교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\_\_\_\_\_전공 주임교수 \_\_\_\_\_ (인)

첨부: 전공 주임교수 의견서



3-3-8 석좌교원 규정

